

참고

(정부발표)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 세트

※ 관계부처 합동, 「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·경제 종합대책」(2.28.)

① [민간] 민간 '착한 임대인'이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시 정부가 절반을 분담하고, 추가 인센티브도 제공

- * 임차인 요건 : ①소상공인법상 소상공인, ②도박·사행행위업, 유흥·향락업 제외
-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상반기(1~6월) 인하액의 50%를 임대인 소득·법인세에서 세액공제(20년 한시)
- 임대료를 인하한 점포가 다수 소재한 전통시장에 노후전선 정비,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안전패키지 지원(20개 시장)

② [정부] 중앙정부·지자체 등 정부 소유재산의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해 임대료를 대폭 인하

- ▶ 지원대상 :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상 소상공인
- ▶ 지원규모 : ① 중앙정부 : 임대요율을 재산가액의 3→1% 인하(2천만원 限)
 ② 국가 위탁개발 재산 : 임대료 50% 감면(2천만원 限)
 ③ 지자체 : 임대요율을 재산가액의 5→최저1% 인하

③ [공공기관] 공공기관(103개* 기관 참여) 소유재산의 소상공인(중소기업 포함) 임차인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확실하게 인하

- * 철도역 구내매장(코레일), 공공주택 단지내 상가(LH), 공항내 편의매점(인천공항, 한국공항), 고속도로 휴게소(도공), 항만(부산항만공사/여수광양항만공사)등 임대시설
- ▶ 지원대상 :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상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
- ▶ 지원규모 : ① 6개월간 임대료 20~35% 인하(임차인과 협의)
 ② 임대료를 매출액에 연동하여 계약한 경우에는 6개월간 납부 유예

④ [가맹본부] 소상공인의 광고·판촉비 인하, 불가피한 영업중단 손해 경감시, 기업 상황과 프로그램에 따라 우대 조건으로 정책자금 지원

* 통상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공동 부담하는 광고·판촉비에 대한 가맹점 부담비율을 10%p 인하하는 경우(상세기준 추후 확정)

< 정책자금 지원가능 프로그램 예시 >

	프로그램	우대사항
산은·신보	경제활력제고 특별운영자금 등	금리(최대 1%p 인하), 보증료(0.2%p 차감)
수은	수출 및 해외사업 관련 대출	금리(0.2%p 인하)
중진공	중소기업 정책자금	
소진공	소상공인 정책자금	

○ 광고·판촉비 부담 인하 대신 다른 명목의 가맹점 추가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모니터링 병행(공정거래조정원)